

저자됨

저자됨

A 씨는 자신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1저자가 바뀌어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것을 알았다. A 씨의 학위논문을 지도한 B 교수는 관련 학술지에 A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출간하였으며 이어 영어로 번역하여 A 씨를 제외하고 다른 인사를 포함하여 영문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를 정부연구비 지원기금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A 씨가 영문 논문에 저자됨을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학위논문은 수여자 1인의 논문이지만 의학연구의 특성상 단독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연구 참여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도교수는 연구의 아이디어, 실험방법의 디자인, 결과의 정리, 해석, 원고 작성 등 전 과정을 학위수여자와 상담,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은 있으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 포함되고, 같은 부서의 교수와 친밀한 관계의 외부인사로 심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문가심사(peer review)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학위논문은 공개된 학술정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차출판에 해당되지 않고,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비로서 학술정보가 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위수여자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표절행위이다. 또한 국문 논문이 발표된 편집인에게 사전 양해없이 출판원고를 번역하여 다시 영문으로 투고하였으므로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다만 학술지는 B 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방법이 없으며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자순서와 책임저자

A 씨는 논문을 투고하면서 책임저자와 제1저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배열한 후 투고하였다. 출간 후 출판사에 저자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출판사는 수록저자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답변:

책임저자는 교신저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guarantor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ICMJE가 규정한 저자 기준에 따르면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 한 사람으로 저자를 규정한다. 교실 단위의 논문인 경우 저자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저자가 되고, 제1저자는 논문의 주인이자 대표저자가 된다. 물론 제1저자는 동시에 책임저자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배열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논문의 공헌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선후배 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문의 작성단계 또는 개념 정립단계부터 저자 여부와 저자 순서를 결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술지에선 투고할 때 저자들의 공헌도와 저자순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록저자의 변경은 COPE의 flow chart를 참고하여 수록저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가관 연구에서 저자

특정 질환의 진료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관련 의사에게 진료과정을 묻는 설문을 하였고 그 결과를 관련 학술지에 논

문으로 투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다 저자로 넣을 수도 없고, 누구를 선별해서 넣을 수도 없어 고민 중이다. 또한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지 못한다면 설문에 응해준 사람의 이름을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울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였다.

답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는 여러 기관의 임상 결과 자료를 종합하는 연구(collective study)가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이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분들의 소속과 성명을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꼭 저자가 논문에 감사의 글로 표시하고 싶다면 포괄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식의 언급이 가장 적절한 방안일 것이다. 통상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익명으로 해서 응답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저자가 응답자를 감사의 글에 기여자로 표시하고 싶다면 이들 모두에게 각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자 수 제한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자가 투고 예정 학술지에서 저자 수를 제한하여 처리 방법을 고민 중이다.

답변:

최근 연구가 복잡해 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논문에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가 많아져서 저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학술지가 투고된 논문의 저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술지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은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맞추어 저자 수를 제한해서 투고해야 한다. 학술지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허가하려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투고규정을 고쳐야 한다.

다기관 공동연구에서 저자됨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ICMJE 에서 규정하는 저자됨의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를 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순서를 정하며 나머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구참여자 또는 기여자로 표기하여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명단을 포함하면 될 것이다.

다기관 연구에서 제1저자, 책임저자

다기관 연구 결과를 투고할 때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답변:

연구의 준비, 진행, 논문작성, 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ICMJE에서 요구하는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의 공저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저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다만 투고 학술지의 편집정책에 따라 공동 제1저자를 용인하는 것이 다르므로 제1저자를 1명으로만 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 책임저자의 수 역시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편집인이 정한다. 국제적인 추세는 논문 투고에서 인쇄까지 여러 교신업무와 논문에 대한 책임을 위해 책임저자 수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술지에 따라 2인 이상인 경우를 인정하는 예도 있다.

학위논문을 연구결과 제시물로 사용한 경우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기관의 연구업적 관리부서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라 제소하였다.

답변:

의학연구는 교수, 대학원생,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 제자는 그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학위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연구결과보고서에 이 연구를 주도한 대학원생의 이름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역시 연구결과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는 공개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말하는 저자 개념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에서 저자명단에 석사논문 제자의 이름이 없다면 유령저자 유형의 출판윤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연구결과보고서는 비공개 문서이고 연구결과물의 최종 성과물인 학술지 발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즉 보고서이니까 대학원생을 빼고 연구책임자 명의로만 기재하고, 나중에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에는 공저자로 넣을 수도 있다. 연구결과보고서 공동연구자 명단 누락은 출판윤리에서 말하는 유령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1)

A 씨는 B 씨 지도아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B 씨는 A 씨 학위 지도 후 수 년 뒤 사직하였으며, A 씨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 자신의 허락없이 학위를 받은 기관의 C 씨가 제1저자, 원로교수인 D 씨가 책임저자로 출간된 사실을 알았다. A, B 씨는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책임저자 D 씨는 해당 논문을 교내연구비 업적 보고를 위한 결과물로 원고에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표기를 하였다.

답변:

학위논문은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며, 서지사항을 갖추어, 학술지에 투고하여 전문가심사를 거쳐 출판하면 비로소 공개되는 논문(article)이 된다.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때 저자됨과 저자 순서는 연구자 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 때 일반적으로 학위수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연구자 팀에서 의논하여 학위수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그 팀의 사정에 의해 그 팀에서 논의하여 저자순서를 정한 의견이라면 그 사정을 따르면 된다. 학위수여자가 제1저자가 아닌 경우는 투고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합의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위수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제1저자가 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 모두가 현재 투고된 원고와 저자됨에 대하여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책임저자 D가 교내연구비 업적 보고를 위해서 오래 전 학위논문을 업적보고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는 출판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D 씨가 책임저자가 된 논문과 학위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편집인보다는 저자가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동일한 내용이라면 교내연구비 수혜부분의 기술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연구비 부분의 기술이 없이 출판한다면 오래 전 연구 결과라도 현재 그 독창성이나 학문적인 주장의 원저성이 유효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고가 가능하다. 이는 시점보다는 그 내용의 학문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2)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학위 논문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 물론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결과가 나왔으나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존의 계획서 이외의 자료들을 모았고 이런 자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중이다. 후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답변: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학위논문 자료 사용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결과가 이미 나와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위수여 전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이므로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 대학 방침에 따른다. 만약 대학이 학위수여 전 학술지 게재를 허용하거나 의무화한다면 후원받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에 추가자료 결과를 덧붙여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덧붙이기 출판(imalas)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 방침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학위논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새로 만든 미발표 자료로만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원받은 연구과제의 결과가 나왔으나 학술지에 게재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처를 밝히고 추가자료의 결과와 함께 학위논문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덧붙이기 출판(imalas)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자의 소속표기 (1)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작성된 연구를 타 기관으로 옮긴 후 투고하는 경우 소속 표기는?

답변: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 발표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기관을 옮긴 경우 실제 연구가 진행된 당시 기관을 기재하고 표지 하단에 현재 저자의 소속기관을 따로 기재한다. 이는 연구가 진행된 기관을 논문의 출처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또는 다른 공저자라도 모두 동일하다.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소속이 있었으나, 출판 시점에 퇴직한 경우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연구 당시의 소속을 존중해야 하므로 연구가 수행될 당시 소속기관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책임저자는 독자와 교신을 위하여 주소 명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관 주소로 할 지 또는 거주지 주소로 할 지는 책임저자가 결정하면 된다. 다만 현재 소속이 없음을 명기하는 문제는 해당 저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표기 (2)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과 의과대학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논문을 작성할 때 소속은 예를 들어 'Department of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로 표기한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없는 새로운 부서가 생겨 명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병원이 대학에 연계된 교육병원이라도 대학에서 정식발령을 받은 교원이나 그 교실의 전공의가 아니면 대학소속을 표기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임의, 임상교수 등은 대학 교원이 아니므로 병원만 표기하면 된다. 대학에 조직이 없고 병원 진료과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Department of OOOO,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처럼 병원만 소속으로 표기한다. 그런데 교실 조직 유무보다는 사실 저자 개인이 대학에서 임용된 신분인가에 따라서 대학명 표기를 해야 정확할 것이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작표기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임상지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학술지 3곳에 동시에 게재하려고 한다. 임상지침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같은 내용을 논문의 내용 및 제1저자는 같지만 각 학술지에는 다른 책임저자로 표기하여 동시에 게재할 경우는?

답변:

공통 관심을 가지는 내용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이 자료의 작성자와 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러 곳에게 게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같은 내용이 여러 잡지에 게재된다는 것을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경우 저자나 작성자는 모두 동일하고 같은 논문이므로 저자 순서나 책임저자는 동일해야 한다. 게재 학술지가 다르다고, 저자와 책임저자가 달라질 수는 없으며, 해당 논문의 교신의 책임자는 책임저자이다. 만일 두 학술지가 책임저자를 달리하면 논문의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고, 업적을 나누기 위한 행위로 오해받기 때문에 저자됨(authorship)의 원칙에 따라 기술한다.